



서울고등법원

제 8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351 명예훼손
피 고 인 박유하 (570325-00000000), 교수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8동 1505호(서초동, 삼풍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0-10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방문(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세욱, 김희원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고합329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61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8. 12. 서울 마포구 서교동 541-28에 있는 '뿌리와 이파리' 출판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고 그 무렵 전국 서점 등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위안부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표현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의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7, 10, 11, 16, 20, 23, 26, 27, 30, 34 기재 표현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표현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나머지 표현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배척하





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위 파기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는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환송 전 당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이미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사는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환송받은 이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7, 10, 11, 16, 20, 23, 26, 27, 30, 34)에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20, 26 기재 표현은 '위안부들은 일본국의 공식적인 정책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거나 강제 연행되어 위안부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일본국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나 공식 사죄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함이 명백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34 기재 표현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해야 할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본인 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으로, 그 표현 내용과 왜곡 정도에 비추어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도 비난이 희석되지 아니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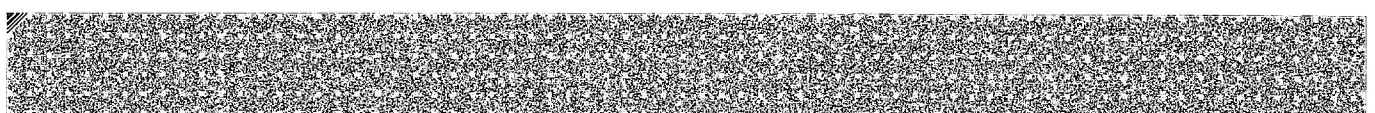
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16, 20, 26, 34 기재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은, 해당 표현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표현 전체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적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을 '별지 범죄일람표2'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위 각 범죄일람표의 '순번'과 '내용'은 동일하다), 환송 전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표현 중 ① 순번 5, 16, 20, 26, 34 기재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표현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② 순번 5, 20, 26 기재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③ 순번 16, 34 기재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나 집단의 명칭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인 고소인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④ 위 표현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환송판결 참조)

가)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같은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





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선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7, 10, 11, 16, 20, 23, 26, 27, 30, 34 기재 표현(이하 '이 사건 각 표현'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일부 표현에 대하여 사실의 적시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대학의 일어일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문학과 한일 근현대사를 연구하였다. 피고인은 한일 갈등의 핵심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저서로 출판하였다. 이 사건 도서는 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학문적 표현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집필 과정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과 사료를 조사하여 이 사건 도서에 직·간접적으로 인용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 집필 과정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사료 등 연구 자료를 위조, 변조하였다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의 기획, 집필,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인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처럼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표현이 그러한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안부의 자발성', '강제 연행의 부인', '동지적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이 사건 각 표현 전후의 맥락이나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이 사건 도서의 집필 의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전체를 통해 피고인의 주제의식, 즉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본 제국이나 일본군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다른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하여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그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학문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이 입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넓어지거나 표현의 내용이 일반화, 추상화될수록 희석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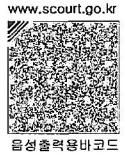
고, 이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이나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나 비교적 균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의 표현은 비교적 진위 여부의 증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효과가 희석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그대로 미치게 된다. 반면 이를 넘어서는 범위의 집단에 관한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표현은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시대상(時代相)을 정의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연구자 개인의 종합적 해석이나 평가로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는 적게는 30,000명에서 많게는 400,000명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다양한 연행 경위나 피해 양상에 비추어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서술에 해당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 해석이나 평가로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16, 20, 26 기재 표현에 사용된 '공적 강제 연행'의 개념에 관하여, 이를 일본 제국의 공식적인 정책에 의한 강제 연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연행 과정에서 일부 군인의 일탈행위가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공식 계통을 통한 '공적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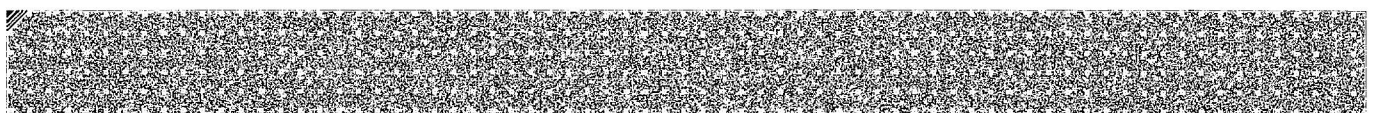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학문적 표현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다양한 학문적 견해 중 어느 하나의 견해만이 옳다고 선언하는 것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용어의 개념이나 포섭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해당 표현에서 취한 개념이 실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것이거나, 통용되지 않더라도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대중의 언어습관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며, 해당 표현이 용어에 대한 특정한 학문적 개념정의를 전제로 한 것임이 표현의 전후 맥락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학문적 견해 표명 내지 의견 진술로 보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다.

'공적 강제 연행' 역시 국가나 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이 존재하여야 이를 '공적 강제 연행'으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나 주장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한 주장이 학계에서 주류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대중의 언어습관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해당 표현이 '공적 강제 연행'에 대한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로 한 것임은 표현 전후의 맥락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표현 중 '공적 강제 연행'에 관한 서술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학문적 표현, 특히 역사적 사실에 관한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에만 주목하여 손쉽게 암시에 의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학문적 표현에 포함된 특정한 문구에 의





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0, 11, 27, 30, 34 기재 표현의 경우, 그 표현 내의 문구만으로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적시 사실'이라 주장한 '자발성'이나 '동지적 관계'에 관한 명제를 곧바로 이끌어 내거나 유추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 표현의 경우,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해당 표현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한 존재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처지와 역할에 관한 피고인의 학문적 의견 내지 주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당 표현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는 명제를 단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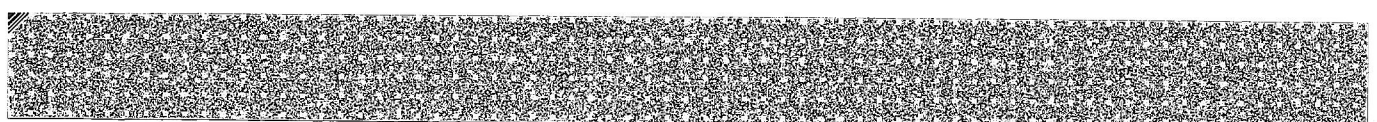
피해자 이○○, 김○○, 김△△, 유○○, 강○○, 정○○, 박○○, 김□□, 김◇◇, 이△△, 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서, 사실은 일본국의 매춘부와는 달리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거나 강제 연행되어 일본군의 감시 아래 전시상황의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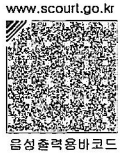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적 쾌락의 제공을 강요당한 '성노예'에 다름없었고, 해야 할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본인 또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가 아니었으며, 일본국과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고, 일본군은 위와 같이 설치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위안부를 국외송출하는 과정에 강제 동원과 강제 연행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마포구 서교동 541-28에 있는 '뿌리와 이파리' 출판사에서,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 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4, 7, 11, 12, 13, 15, 16, 27, 30, 34와 같이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되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6, 7, 8, 9, 10, 13, 14, 17, 18, 19, 21, 22, 23, 24, 25, 28, 29, 31, 32, 33, 35와 같이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위안





부'들을 '유괴'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16, 20, 26과 같이 기재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 있다고 하다면 군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어서 공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고 그 무렵 전국 서점 등을 통해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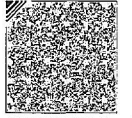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송 전 당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4, 6, 8, 9, 12, 13, 14, 15, 17, 18, 19, 21, 22, 24, 25, 28, 29, 31, 32, 33, 35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었으므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7, 10, 11, 16, 20, 23, 26, 27, 30, 34에 관하여는 제4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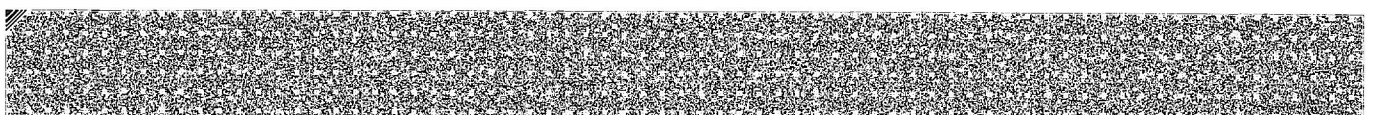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김재호 _____

 판사 김경애 _____





판사 서전교 _____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쪽	내용	비고
1	19쪽	<u>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u>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2	32쪽	<u>'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3	33쪽	<u>'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u>	"
4	38쪽	<u>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u>	"
5	38쪽	<u>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u>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6	61쪽	<u>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 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u>	위안부가 일본국에 자긍적





순번	쪽	내용	비고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 있지만, 그러한 <u>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금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 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 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u>	협력자였음을 표현
7	62 쪽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 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u>조선인 위 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 는 같다고 해야 한다.</u>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8	65 쪽	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 도 모르는 군인들을 <u>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 를 북돋아주는 역할.</u>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 <u>조선인 위안 부</u> '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
9	67 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 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u>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 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u>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순번	쪽	내용	비고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뺐"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 봐"라는 말은, <u>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u>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10	99 쪽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 <u>전쟁범인</u> ', 즉 <u>전쟁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u> 그 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 <u>피해자</u> '라고 해도 ' <u>제국의 일원</u> '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11	112 쪽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u>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2	120 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 <u>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u> 다시 말해 ' <u>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3	130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	위안부가



순번	쪽	내용	비고
	쪽	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u>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u>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14	137쪽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15	144쪽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센삔'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u>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6	158쪽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 <u>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u> "든가 " <u>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u> "(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17	160쪽	오히려 <u>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화해를 위해서』).</u>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순번	쪽	내용	비고
18	160 쪽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
19	190 쪽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
20	191 쪽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순번	쪽	내용	비고
		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21	205 쪽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u>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u>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22	206 쪽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u>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u>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궁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23	206 쪽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u>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u> 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
24	207 쪽	<u>협력의 기억을 거세</u> 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
25	208 쪽	<u>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u>	"





순번	쪽	내용	비고
26	215쪽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 <u>강제연행</u> '이라는 <u>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u>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27	246쪽	1996년 시점에 ' <u>위안부</u> '란 근본적으로 ' <u>매춘</u> '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28	265쪽	<u>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u>	<u>위안부가 일본국과의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u>
29	265쪽	그 이유는 ' <u>조선인 위안부</u> '가 ' <u>전쟁</u> '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 <u>제국의 피해자</u> '이면서, <u>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u>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30	291쪽	'조선인 위안부'란 " <u>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u>	<u>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u>
31	294	그들이 <u>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u>	위안부가



순번	쪽	내용	비고
	쪽	<u>'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u>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32	294 쪽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u>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u>	"
33	294 쪽	<u>'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u>	<u>위안부가</u> <u>일본국에</u> <u>협력자였음을</u> <u>표현</u>
34	296 쪽	그리고 <u>'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u>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35	306 쪽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u>'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u>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였음을 표현





범죄일람표2

순번	쪽	내용
1	19쪽	<u>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u>
2	32쪽	<u>'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u>
3	33쪽	<u>'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u>
4	38쪽	<u>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u>
5	38쪽	<u>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u>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6	61쪽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u>정신적 '위안'자로서의</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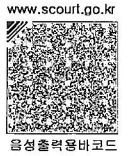
순번	쪽	내용
		<u>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금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u>
7	62쪽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u>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u>
8	65쪽	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u>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u>.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u>조선인 위안부</u>'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u>썩들 수 있었다.</u>
9	67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u>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u>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뺐"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



순번	쪽	내용
		될까봐"라는 말은, <u>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u> 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10	99쪽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u>'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u>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u>'피해자'</u> 라고 해도 <u>'제국의 일원'</u> 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11	112쪽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u>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u>
12	120쪽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u>'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u>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u>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u>
13	130쪽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u>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u>



순번	쪽	내용
14	137쪽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5	144쪽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센삔'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16	158쪽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17	160쪽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화해를 위해서).
18	160쪽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 - 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순번	쪽	내용
19	190쪽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u>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 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u>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20	191쪽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u>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u>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21	205쪽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u>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u>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22	206쪽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



순번	쪽	내용
		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u>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u>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23	206쪽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u>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u>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24	207쪽	<u>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u>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25	208쪽	<u>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u>
26	215쪽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 <u>강제연행</u> '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 <u>국가범죄</u>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순번	쪽	내용
27	246쪽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8	265쪽	<u>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u>
29	265쪽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u>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u>
30	291쪽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31	294쪽	그들이 <u>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u>
32	294쪽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u>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u>
33	294쪽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34	296쪽	그리고 <u>'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u>





순번	쪽	내용
35	306쪽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u>'완벽한 피해'</u> 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u>'협력'</u> 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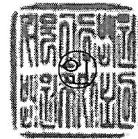


등본입니다.

2024. 4. 12.

서울고등법원

법원주사보 성 한 호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